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취업제한 장애인관련기관 확대〉

-근로지원인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기관-

■ 김예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9561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신 은 호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의견	2

I. 개요

1. 김예지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9561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예지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6. 26.

(3) 회 부 일 : 2026. 7. 23.

나. 제안이유

현행법은 법원이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근로지원인은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직업생활을 지원하면서 장애인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 기관은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 안전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장애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기관에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 기관을 추가함으로써 재범의 위험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59조의3제1항제12호).

II.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근로지원인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기관’을 취업제한 대
상 장애인관련기관에 추가하면서, 그 적용 대상을 직접 근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한정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제1항제
12호).

[illegible]

현행	개정안
관(이하 “장애인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이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이라 한다)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 11. (생략) 1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장애인 <u>표준사업장</u> 13. (생략) ② ~ ⑬ (생략)	----- ----- ----- ----- ----- ----- ----- ----- ----- ----- ----- ----- ----- 1. ~ 11. (현행과 같음) 12. ----- -----<u>표준사업장 및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기관(직접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한정한다)</u> 13. (현행과 같음) ② ~ ⑬ (현행과 같음)

2. 검토의견

□ 현행법에서는 법원이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이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이라 함)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

□ 이러한 취업제한 제도는 장애인의 이용이 잦은 장애인관련기관에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근무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기 보호 능력이 부족할 수 있는 장애인의 안전과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로 2012년부터 도입되었음.

- 이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장애인관련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기관,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임.

1)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장애인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이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이라 한다)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이하 각 호 생략)

<현행법상 취업제한 대상 장애인관련기관 현황>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제1항 각호

1. 제54조의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제59조의11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제59조의13의 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
2.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을 하는 기관·단체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
5.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및 같은 법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
6.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같은 법 제2조의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간호법」 제2조의 간호사·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의료기사로 한정한다)
7.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제3항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및 같은 법 제32조의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8.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활동지원기관
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의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같은 조 제4호의 정신건강증진시설
1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의 특수교육기관 및 같은 법 제11조의 특수교육지원센터
11.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1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1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2항의 이동지원센터 및 같은 조 제3항의 광역이동지원센터

□ 개정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²⁾에 따른 근로지원인을 모집·채용기관의 종사자 중 직접 근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취업제한 명령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려는 것으로,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근로지원인”이라 한다)을 보내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의 선정 및 취소, 서비스의 제공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증장애인 근로자와 직접적·지속적으로 접촉하는 근로지원인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의 취업을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취업제한 명령이 직업선택의 자유 및 취업 기회에 대한 제한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적용 범위를 직접 지원 업무 수행자로 한정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 보호 필요성과 기본권 제한 사이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참고로, 근로지원인은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장애로 인하여 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인 업무 처리, 의사소통, 이동, 문서 작성·정리, 작업 준비·마무리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이를 보조하여 안정적·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람임.
- 2026년 5월 기준, 근로지원인은 10,846명으로 확인되었으며,³⁾ 근로지원인을 모집·채용하는 근로지원인서비스 사업 수행기관⁴⁾은 전국 164개소가 운영 중으로, 주로 장애인단체, 자립생활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3) 5월 중 하루라도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업비를 지급 받은 인원임(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출).

4)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용자·지원규정」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사업 수행기관"이란 근로지원인을 고용·운영하는 주체이며, 공단과 지원약정서를 체결한 기관을 말한다.

<근로지원인서비스 사업수행기관 현황>

연도	계	장애인 단체	자립생활 지원센터	장애인 복지관	기타
2026년 (5월 기준)	164개소 (100.0%)	85개소 (51.8%)	31개소 (18.9%)	14개소 (8.6%)	34개소 (20.7%)

주1): 기타는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정신재활시설, 보호작업장, 평생교육시설, 장애인체육시설 등임.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다만, 개정안은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병렬적으로 열거하면서 일부 기관에 대해서만 그 적용 대상을 한정하는 내용이 함께 규정되어 있는데,

한정 문구의 적용 범위가 불명확하게 해석될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적용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는 자구 정비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개정안의 문언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및 근로지원인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기관(직접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한정한다)”의 형식으로 되어 있어,
- 괄호 안 한정 문구가 근로지원인 모집·채용기관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장애인 표준사업장까지 포함하여 적용되는 것인지가 조문의 해석상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3. 관계 부처 및 단체 의견

가. 보건복지부

-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 2에 따라 중증장애인이 안정적 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사람(근로지원인)으로 취업하지 못하게 하여 장애인 대상 학대 및 성범죄를 사전 예방하려는 입법 취지 및 개정 내용에 동의함.

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장애인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장애인학대 및 성범죄에 노출될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는 법적 보호 강화 취지의 개정안에 찬성함.

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근로지원인은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무 특성에도 불구하고, 현행 취업제한 조항에는 포함되지 않아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므로, 개정안에 찬성함.

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 장애인과 직접 대면하는 제공기관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음에도

일부 기관은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되어 제도적 사각지대와 법적 공백이 존재하였던 만큼, 이를 반영하여 관리 체계를 현실에 맞게 보완하려는 조치로, 개정안에 찬성함.

문 의 처
02)6788-5502